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55624 부당이득금

원 고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피 고 1. ○○광역시 ○○구

소송대리인 A, B

2. ○○광역시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5. 12. 23.

판 결 선 고 2026. 1. 2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광역시 ○○구는 18,524,382원, 피고 ○○광역시는 3,704,8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광역시 ○○구는 18,524,382원, 피고 ○○광역시는 3,704,8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 ○○구 ○○동 000-0 외 11필지 합계 82,085.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이를 ○○○○○사 조직법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사용하고 있다.

② 피고 ○○광역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의 귀속 주체이고, 피고 ○○광역시(이하 '피고 ○○시'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관한 규정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3 제1호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호는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경감 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경감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토지 부분을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이라 한다).

②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③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다(구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및 납부

① 피고 ○○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년 재산분 재산세로 57,842,328원, 지방교육세로 11,568,460원을, 2018년 재산분 재산세로 63,062,937원, 지방교육세로 12,612,580원을 각 부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세액이다.

②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라 2017년 귀속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2018년 귀속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사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



분에 따른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세액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의 귀속 주체인 피고 ○○구와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인 피고 ○○시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이든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 5521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 역시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

3)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나목),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경감 부분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이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②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2005년)'이라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5년)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



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③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경감비율만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던 방식을 새로 개편된 재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의미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 및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13조 제1항 단서로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되 그 과세표준만을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과세관청이 그동안 대부분의 재산세 과세처분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은 처



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는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내려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

3.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논의의 전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2. 12. 31. 구 지방세법 제106조를 통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하여 연구논문 '재산세 경감토지 분리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방식 검토'(을아 제2호증)를 발표하였는데, 위 연구논문에는 ①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¹⁾, ②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²⁾(이하 '유형2 계산방식'이라 한다), ③ 전체 토지에서 과표 구분 후 비감면분 토지를 분리과세로 분류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³⁾, ④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1) ㉠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의 전체면적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구분한 후, ㉡ 감면분은 '분리과세'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 비감면분은 '별도합산'의 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며, ㉣ 산출된 세액(즉 감면 전 산출세액)에 다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와 별도합산 모두에 대해)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2) ㉠ 과세대상 토지를 경감비율에 따라 감면분과 비감면분으로 나눈 후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 감면 전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감면분 및 비감면분에 대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 대상토지 중 감면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비감면분에 대해서는 종합·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3) ㉠ 재산세 감면대상인 전체 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 이후 경감비



서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만을 적용하여 세액산출하는 방식⁴⁾, ⑤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에서 공제하는 방식⁵⁾, ⑥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대상으로의 구분전환 후 경감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는 방식⁶⁾등 6가지의 세액계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 주장 - 유형2 계산방식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르면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 전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감면 전 과세표준액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각 과세표준에 이 사건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별도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유형2 계산방식의 타당성

가)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

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4)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등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5)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6) ㉠ 경감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부분은 본래의 과세대상 분류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 예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감면 전 세액을 산출 후 경감비율에 따라 세액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경감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은 이 사건 경감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비경감 부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비경감 부분에 각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감규정이 재산세의 경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먼저 세액을 산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경감 부분 및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의 감면 전 과세표준에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에 지방세 등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경감규정,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 구분 후 과표에 경감율을 적용하여 과표공제 후 세액을 산출하는 유형2 계산방식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유형2 계산방식이 중복감면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182조는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구분전환도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특례의 배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은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고(제105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제106조 제1항),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0조, 제111조). 결국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 토지가 처음부터 분리과세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일 뿐, 그 과세대상 구분을 전환시키는 규정이라거나, 더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을 제외한 이 사건 경감규정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재산분 재산세로 57,842,328원, 지방교육세로 11,568,460원, 2018년 재산분 재산세로 63,062,937원, 지방교육세로 12,612,58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유형2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귀속 연도	납부세액		정당세액		초과납부액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2017	57,842,328원	11,568,460원	48,972,160원	9,794,430원	8,870,168원	1,774,030원
2018	63,062,937원	12,612,580원	53,408,717원	10,681,740원	9,654,220원	1,930,840원

위 '납부세액'과 '정당세액'을 비교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위 표 '초과납부액'란 기재 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구는 '재산세 초과납부액'란 기재 합계 18,524,388원(= 2017년 귀속분 초과납부액 8,870,168원 + 2018년 귀속분 초과납부액 9,654,2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8,524,382원, 피고 ○○시는 '지방교육세 초과납부액'란 기재 합계 3,704,870원(= 2017년 귀속분 초과납부액 1,774,030원 + 2018년 귀속분 초과납부액 1,930,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2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원고가 이 사건에서 2회의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최종 청구취지를 정리한 점 등 고려)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2-24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김○○